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코너에서는 정보제공업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과 창업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Q&A 형식으로 제공한다.

■ 조소연/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Q**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한 법안이 의회에 상정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미흡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투자이익을 저해하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인적·재정적·시간적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올해 '데이터베이스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99년 정기국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을 기준으로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로 충분하며,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외국의 DB까지 보호하게 되어 국부를 유출할 수 있다는 반대논리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법적 미흡함으로 인하여 피해받고 있는 국내 데이터베이스 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전문성과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는 주장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저작권법외에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입법화하고 준비중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이하 99년 정기국회에 상정되었던 '데이터베이스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소개합니다.

## 목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여 데이터베이스관련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안 제1조)

## 정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데이터베이스 운영자, 추

출, 재이용, 공표,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관리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 정의(안 제2조)

※ 데이터베이스 : 문자·수치·기호·도형·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정보, 기타 자료들(이하 "소재"라고 한다)을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방식으로 정리·구성하여 멀티미디어기·정보통신망 또는 기타의 수단에 의하여 검색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투자와 노력을 행한 자

※ 데이터베이스 운영자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아 등록하여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자

※ 추출 :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검색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매체로 옮기는 행위

※ 재이용 :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배포, 대여, 기타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데이터베이스 관리정보 :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 복제물에 포함되거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데이터베이스 운영자 및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방법과 조건에 관한 정보와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

※ 기술적보호조치 : 이 법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또는 그 이용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기술적 조치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추출 또는 재이용할 권리를 부여(안 제6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가 공표된 다음 해부터 15년간 존속함(안 제13조)

-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부분에 대

해서 공표된 다음해부터 15년간 권리를 보호함

- 권리의 재산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의 양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 및 대여허락, 질권 행사 등을 규정(안 제8조 내지 제11조)

###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활성화

-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제한(안 제7조)
  - 정당한 권한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이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를 추출하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및 운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한 교육·연구·조사 목적을 위해 추출 및 재이용하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및 운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법적·행정적·입법적 목적을 위하여 내부자료로서 필요하여 추출 및 재이용하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및 운영자가 불명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법정이용허락제도를 도입(안 제15조)
-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를 민간부문에서 활용 촉진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용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민간부문의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데이터베이스 분쟁 조정 및 등록

-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및 분쟁의 조정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 데이터베이스의 등록에 관한 절차, 데이터베이스 복제물의 제출, 데이터베이스 등록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등록 권한 위탁 등을 규정(안 제18조 내지 제24조)

###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권리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조치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및

운영자에게 침해의 정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함(안 제26조 내지 제28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행위(안 제25조)

-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추출 또는 재이용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및 운영자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보는 행위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침해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추출 또는 재이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또는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나 구성을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 복제물을 재이용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경우(단 제7조 제1항에 의한 공정이용의 경우나 호환 등의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의 정당한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프로그램 등을 공중에 양도, 대여 또는 유통하는 행위

### 벌칙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안 제29조 및 제30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및 운용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를 도입함(안 제31조) 